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0년 4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 현행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21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목),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현행)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 → (개선)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1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

- (국가건강검진) 만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실시
 - * 문진, 신체계측, 흉부 X-선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25개 항목(비만,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빈혈 등 17개 목표 질환)
- (우울증 검사) 20·30·40·50·60·70세에 우울증 검사 실시
 -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19년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 현황〉

(20.1월말 기준, 단위: 명, %)

연령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계	3,349,251	2,339,421	69.85
20세	303,605	94,215	31.03
30세	459,721	316,672	68.88
40세	703,072	528,947	75.23
50세	777,638	560,820	72.12
60세	718,272	539,768	75.15
70세	386,943	298,999	77.27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 〉

(단위: %)

연령군	남자	여자	전체
18~29세	3.1	2.9	3.0
30~39세	0.1	2.4	1.2
40~49세	1.4	0.6	1.0
50~59세	0.6	1.8	1.2
60~69세	0.3	2.2	1.3
70세 이상	0.0	2.7	1.5

* 일년 유병률: 지난 1년동안 한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 출처: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보건복지부)

참고 2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20.3.26)

■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복지부)

○ (현황)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중 이고, 20세, 30세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 중

→ 20대 중반에 졸업,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 조기발견 어려움

* 대학교 3학년(23세)~대학원(25세) 시기에 우울증상 심각('18, 청소년연구원)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47.2%), 2위인 교통사고(11.6%)보다 월등히 높음('19, 통계청)

【 청년들의 목소리 】

“20대 중반기에 학업 문제와 취업 걱정으로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많습니다”

“청년층은 자살이 많고 정신건강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 (제도 개선)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청년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20. 하)

* (예)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 청년 → 22, 24, 26, 28세 중 1회 검사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53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20.4.2.

II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 선정 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 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민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 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 일 경우 지원 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63,788원

참고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1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②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 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 시 약 1주 소요(신청 접수), 950만 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 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 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③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360, 기획재정부 복지에산과·행정예산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20.4.3.

Ⅲ

의료취약지 원거리 혈액투석 줄어든다

- 올해 시범사업으로 의료취약지 3곳에 인공신장실 운영비 연간 2억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4월 2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 혈액투석 환자는 지속적인 인공신장실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신장실이 없어 원거리 혈액 투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겪고 있다.
 - 또한 인공신장실이 있어도 환자 수 부족, 의료 인력 부족 등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공신장실이 없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지 3곳을 선정하여, 인공신장실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 적합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의료인력 인건비로 연간 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 : ①과 ② 모두 충족

- ① 혈액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 ② 해당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이동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해 검토하여, 양질의 혈액투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자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에서 보다 안정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44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육아정책연구소, 2020.4.20.

IV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혁신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구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법」은 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 (의료기기 기업현황, '18년) 총 3,283개 기업 중 81%가 매출 10억 원 미만
 -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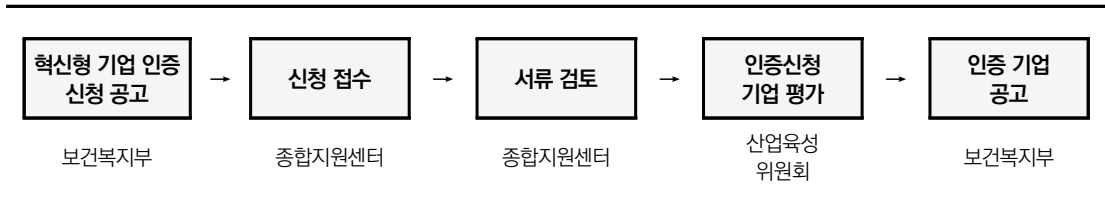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의료기기산업 시행계획 수립 등(제3조)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 ②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제4조~제7조)
 -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유형별 구분 등(제2조, 제9조~제13조)
 - (인증 대상)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
 - * (500억 원 이상) R&D투자 6% 이상, (500억 원 미만) R&D투자 8% 또는 30억 원
 - *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대상(법 제2조 제3호 다목)
 - (인증기준)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
 - (유형별 구분)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을 구분하여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안) 〉

인증 유형		인증 대상	인증방법
혁신선도형	500억 원 이상 기업	(R&D 투자 비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결정
혁신도약형	500억 원 미만 기업	(R&D 투자 비중) 연간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



* 혁신형 기업 인증 운영 실무는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위임(법 제33조)

④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제14조)

-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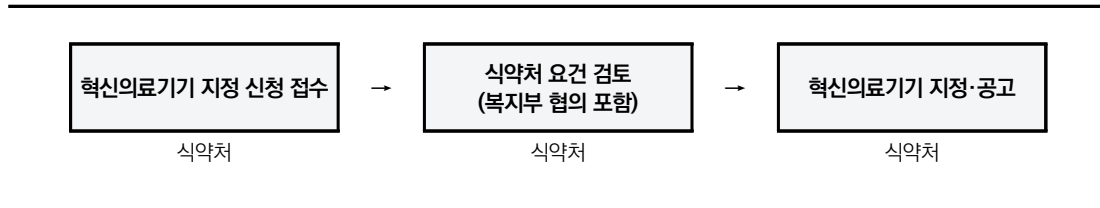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	정책 목적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혁신기술 개발 촉진
2.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술의 혁신
3.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기술경쟁력 고도화
4.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공익적 가치 실현

⑤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15조~제16조)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방법과 지정 취소,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혁신의료기기 지정시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하는 등 ‘혁신의료기기 특례’ 적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 ⑥ 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제17조~제20조)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조사·보급하기 위한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등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

〈(법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령 제정 이후 의료기기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25, 1조2000억 원)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 도구(키트)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450,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2020.4.21.







V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 내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 예정 -
- 국민의 복지 체감도, 지자체 복지행정의 효율성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 관점	지자체 공무원 관점
<p>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수급가능 서비스 안내 • 복지로를 통한 맞춤형 검색 가능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선제적 안내 	<p> 표준화된 복지사업 기획과 업무 지원 기능 강화로 업무효율성 증대</p>
<p>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확대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 • 신청·접수 채널 확대로 공간적 제약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마켓형 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실시간 사업 정보 공유와 신속한 사업 운영 • 모바일 행복e음과 시비서로 업무효율성 증대
<p> 수요자 욕구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욕구에 적합한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최적의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 	<p> ㄱ자동 조사 및 월별 확인 조사 체계 변화로 업무 부담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 항목 정비, 일정 기준 이하 대상자 결정 자동화로 ㄱ자동 조사·판정 업무 효율화 • 월별 확인조사 시 공적·금융자료 반영주기 단축, 환수·소급에 대한 자동화로 소명 감소, 업무 효율 증대
	<p> 민간 서비스 정보 및 복지 자원 접근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 종사자, 사업장, 시설-법인 정보 통합 관리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협업 기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3일(목)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1.9월 예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1월): 복지 신청창구 확대, 반자동조사 등 소득·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사례관리)
 (‘22.7월):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

■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가칭)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②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플랫폼(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매칭)하여 제공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

**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모바일) 업무 환경 및 인공지능(AI) 비서 도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 끝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47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시스템 1팀, 2020.4.23.

VI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 상생의 목소리를 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23일(목) 기준, 전국 183개(80%)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이며, 4월 말까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예정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

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중이다.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

○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된다.

- 이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별 신청 일정을 안내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한편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분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소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센터 내 신청·지급 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지급하고 있다.

○ 인천 남동구에서는 마스크 5부제에서 착안한 가구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는 신청 공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였다.

- 인천 부평구에서는 지역 내 복지통장을 통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에 소비쿠폰을 직접 전달하고, 한시적으로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이처럼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지역별 지급 방식과 상품권 종류, 사용처 등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더불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 주요 사례 〉

- (저소득층)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봐두었던 등산화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이걸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사용한 세탁기를 이참에 바꿨습니다”
- (소상공인) “최근 손님이 몰리며 전기밥솥이 다 팔렸다. 구청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정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늘어 걱정을 덜었다. 옆 가게인 약국과 꽃집도 그렇다”, “시장에 지역상품권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인 거 같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그간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 21대 총선 등으로 업무가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에 적극 노력해주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소비쿠폰이 4월 안에 모두 신속히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지역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47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0.4.24